

인감 ☐ 사망 ☐ 실종선고
☐ 신고사항의 변경 ☐ 말소 ☐ 부활 신고(신청)서

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대상자	성명 (한자)	()	인감 ㉠
	주민등록 번호		
	국적		
	주소		

신고(신청) 사항	
서면신고 사유	
증명자료(첨부)	

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, 한정후 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동의	성명		관계	인감 ㉠ 또는 서명
	생년월일			
	주소			※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첨부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☐ 재외공관(영사관)

(서명 또는 인)

☐ 수감기관(교도관)

(직인), (서명 또는 인)

「인감증명법」 제8조·제9조·제11조 및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1조·제12조에 따라 인감
(사망, 실종선고, 신고사항의 변경, 말소, 부활)신고(신청)합니다.

수수료

없음

년 월 일

인)

신고(신청)인:

(서명 또는

주소:

(주민등록번호:)

대리인:

(서명 또는 인)

주소:

(주민등록번호:)

관계:

〇〇시·구·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1.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2.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,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·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.
3.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,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4. 인감(사망, 실종선고, 신고사항의 변경, 말소, 부활)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[√]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.

※ 인감 변경신고는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5. 재외국민, 해외거주(체류)자,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(신청)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
가. 재외국민, 해외거주(체류)자: 재외공관(영사관)

나. 수감자: 수감기관(교도관)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(신청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